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45
----------	------

2013년 7월 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5. 31. 김제리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3. 6. 12.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3. 7. 4 상정)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제리 의원)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를 2013년 3월 8일부로 구성하였음.
- 서소문은 광희문과 함께 도성 밖으로 시신이 나갈 수 있는 문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서소문 밖의 길거리는 참수형을 집행하는 행형지로

천주교 박해시기에 많은 신도들이 참형을 당한 역사적 장소임. 천주교 박해는 조선후기 민중들이 성리학 중심의 지배이념과 사회질서에 대항하여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사상을 요구하여 나타난 사건으로 특정 종교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조선후기 사상계의 일대 변화를 이끌어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기여한 사건으로 오늘날 학계는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었던 서소문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 순교기념공간, 기념전시관, 천주교성물 판매소 등의 시설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경우, 공원은 지방자치사무이므로 국비의 지원이 어렵고, 또한 서소문공원이 자치구관리 공원이므로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임.
- 또한, 서소문공원은 92%가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이므로 향후 역사공원 조성시 토지의 무상사용허가가 어려움(현재 서소문공원은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중구가 소송 중에 있음).
- 따라서, 서소문 순교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세계적인 성지의 면모를 갖춘 새로운 도심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서울시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푸른도시국, 중구 등 다양한 부서의 협력이 필요할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은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를 푸른도시국의 업무에만 한정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이 필요함.

□ 주요내용

- 1) 2013년 3월 8일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 2) 구성결의문에 나타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모두 변경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노 수)

□ 검토요지

- 동 명칭변경안은 현재 구성·활동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를 푸른도시국의 업무에 한정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안된 것임.
- 특별위원회의 명칭변경에 타당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제도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안전을 미리 심사하도록 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의 명칭은 상임위원회의 경우 집행부 소관 부서의 명칭이나 기능을 기준으로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특별위원회가 심사·처리하기 위한 사안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즉,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그 명칭이 구성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문에 근거하는 것이 대부분임.
- 현재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서소문공원은 자치구 관리 공원이므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며, 더불어 서소문공원의 92%가 국유지인 바, 서소문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방안 마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은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를 역사공원 조성으로만 제한시킬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동 특별위원회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이에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서소문공원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서소문 순교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새로운 도심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중구가 협력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동 특별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당초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이유에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원활동 전반을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포괄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위원회의 명칭 변경이 동 특별위원회 활동이나 목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의안 번호	1345
----------	------

발의년월일 : 2013년 5월 31일
발 의 자 : 김제리 의원 외 10명

1. 주 문

- 가. 2013년 3월 8일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 나. 구성결의문에 나타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모두 변경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를 2013년 3월 8일부로 구성하였음.
- 서소문은 광희문과 함께 도성 밖으로 시신이 나갈 수 있는 문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서소문 밖의 길거리는 참수형을 집행하는 행형지로

천주교 박해시기에 많은 신도들이 참형을 당한 역사적 장소임. 천주교 박해는 조선후기 민중들이 성리학 중심의 지배이념과 사회 질서에 대항하여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사상을 요구하여 나타난 사건으로 특정 종교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조선후기 사상계의 일대 변화를 이끌어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기여한 사건으로 오늘날 학계는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었던 서소문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 순교기념공간, 기념전시관, 천주교성물 판매소 등의 시설을 공원 시설로 설치할 경우, 공원은 지방자치사무이므로 국비의 지원이 어렵고, 또한 서소문공원이 자치구관리 공원이므로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임.
- 또한, 서소문공원은 92%가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이므로 향후 역사공원 조성시 토지의 무상사용허가가 어려움(현재 서소문공원은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중구가 소송 중에 있음).
- 따라서, 서소문 순교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세계적인 성지의 면모를 갖춘 새로운 도심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서울시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푸른도시국, 중구 등 다양한 부서의 협력이 필요할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은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를 푸른도시국의 업무에만 한정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3)국유재산관리법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결의문 붙임자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한다.

주문 중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를 “서울 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로 한다.